

	<h1>보도자료</h1>	2021. 12. 18 (토)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대선후보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		

“ 어려움 함께 짊어지겠습니다 ”
이재명, 공시가격 관련 제도 개편 공약 발표

- 주택가격 상승,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으로 재산세·건강보험료 증가 등 국민부담으로 이어져
-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해 재산세 및 건강보험료 올해 수준 유지, 기초연금·기초생활보장 등 복지 제도에 ‘조정계수’ 도입 추진 등 방안 제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공시가격 관련 제도 개편’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공약 발표 서두에서 “모든 정책의 목표는 국민의 고통과 불편을 줄이고, 국민의 더 나은 삶과 행복을 실현하는 데 있다” 며, “정책이 국민을 더 고통스럽고 어렵게 해서는 안 된다” 고 밝혔다. 또한, “정치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므로 국민이 요구하고 국민에게 필요한 일은 언제든지 할 수 있어야 한다” 고 언급하며 평소 밝혀온 실용주의적 가치관을 강조했다.

정치인 개인의 정치이념과 가치실현을 위한 정책 수행에 대한 경계의 말도 덧붙였다. ‘국민이 원하고 국민행복에 필요한 일’ 이라면 ‘언제든 바꿀수 있는 용기와 유연성’ 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자신의 정치철학을 강조한 이 후보는 “올해 주택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여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 또한 상당히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며, 부동산 공시가격의 상승이 재산세·종부세 같은 세금뿐 아닌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그리고 기초연금·장애인연금 등 68가지나 되는 다른 제도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중 39가지는 국민이 직접 부담하고 있어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국민 부담이 직접적으로 증가하고, 복지 수급 자격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집값 폭등으로 인한 부담을 온전히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며 “어려움에 처한 민생경제를 고려하여 부동산 공시가격 관련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한 뒤, 관련 대책을 제안하였다.

구체적 방안 첫번째로는 재산세와 건강보험료를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세금과 보험료 부과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부동산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정할 때 적용되는 재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부터 하향 조정하자는 것이다. 재산세의 세부담 상한 비율 또한 인하하여, 추가적인 재산세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도 언급했다.

또한,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으로 복지 수급 자격에서 탈락하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한 다각적인 보완 대책 마련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장애인연금 등 국민에게 영향이 큰 제도는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완충장치가 없는데, 영향이 큰 제도부터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유사한 ‘조정계수’를 신속히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부동산 공시가격이 영향을 미치는 68가지 제도 중 ‘조정계수’가 없는 제도는 성격에 따라 4~5개 항목으로 대분류하고, 각 제도에 적합한 ‘조정계수’의 순차적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2022년 공시가격 열람 및 확정까지의 잔여 시간이 많지 않음을 들어, 당정의 신속한 협의를 통해 국민부담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고, 과도한 부담이나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제도 개편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참고자료】 공시가격 주요 활용 제도

< 공시가격 주요 활용 현황 >

구분	항목	조정제도	비고 (비율 등)
조세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주택 60%, 토지 70%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2021년 95% 2022년 100%
	상속세 및 증여세	없음	감평액 또는 공시가격 기준
준조세	개발부담금 부과액 산정	없음	공시가격 기준
	재건축부담금 부과액 산정	없음	공시가격 기준
복지	기초연금대상 판단	소득환산율	재산의 소득환산액 = (공시가격-기본 재산액) × 소득환산율(0.04) * 만65세 이상의 70%에 지급(전체수급자 규모는 공시가격변동과 무관)
	기초생활보장대상 판단	소득환산율	재산의 소득환산액 = (공시가격-기본 재산액) × 소득환산율
	지역 건강보험료 부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재산기준 : 지방세 과표(공시가격 -공정시장가액비율(60%))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	공정시장가액비율	재산기준 : 지방세 과표(공시가격 -공정시장가액비율(60%))
평가	보상평가	없음	공시가격 활용, 감평사 평가
	경매평가	없음	"
	국공유지 매각평가	없음	"